

'17.3 고시변경에 따른 수가가감산 주요개정사항

1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(고시 제57조,58조)

1-1) 가산받는 급여유형,직종 추가

①방문요양+방문간호+방문목욕 가능(제공하고 있는 모든 급여유형 동시에 가산_선택불가)

※급여비용청구>각 급여유형의 급여내용저장까지 수행 후 가감산 결정요청

②의무배치인원인 시설장은 급여유형별로 신고 필요

③가산받는 직종(팀장급여보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)은 방문요양에만 근무내용 신고 필요

※방문3종은 겸직도 가산 가능

※가산점수: 사회복지사 >1.2점/팀장급여보·간호(조무)사 >1점

※팀장급여양보보호사 신고 방법: 근무내용관리>근무내용신고의 우측상단의 팀장급 요양보호사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기관의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체크하여 저장하면 종사자 목록에 생성

※팀장급여양보보호사 조건(월 60시간이상 60개월이상) 실근무여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함

④결정요청은 방문요양에서만 결정요청>모든 가산급여유형에 같은 가산점수 결정내용조회 확인

1-2) 방문비율 예외 조건

①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**수급자 수가 30인 이상**

+ **사회복지사 1명만** 있을 경우(다른가산받는 직종없음)
>30인 이상 방문하면 가산점수 100%

②다만, **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이상 방문**

※결정요청>방문관리비율사용안함>30인이상방문 선택

1-3) 수급자 방문관리(선택)

①사회복지사 방문관리 메뉴> **수급자 방문관리**로 명칭 변경

②급여유형별로 해당 수급자의 방문일자와 시간을 입력(방문자는 근무내용관리 제출자만 보임)

※2개이상의 급여유형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1인으로 산정

③미방문사유(사망,입원,월종급여종료)에 해당 되는 사람은 전체수급자에서 제외

④월 중 24시간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사람은 수급자 명단에서 제외

2. 가산 산정의 원칙 변경(고시 제54조)

정원초과	인력배치 기준위반	배상보험 미가입	인력추가 배치가산	간호사 배치가산	야간직원 배치가산	맞춤형 가산
○			×	×	×	×
	○		×	○	○	○
		○	○	○	○	○

3.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비율 변경(고시 제68조)

(변경전) 3~10% 월별 차등적용 > (변경후) **10% 일률적용**